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사항 없음
- 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 대상]: 해당사항 없음
- 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]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] : 해당사항 없음

* 위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법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라며(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제외)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신한자산운용